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9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이재관 · 박지원 · 이정문
송재봉 · 안도걸 · 박용갑
김영환 · 정준호 · 윤준병
문진석 · 정진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

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60조제2항제9호 개정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제7항 중 “크기와 구조”를 “크기, 구조 및 제동장치(制動裝置)”로 한다.

제16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개정한다.

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크기와 구조”를 “크기, 구조 및 장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 ③ (생 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 서 어린이가 <u>개인형 이동장치</u> 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p>	<p>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개인형</u> <u>이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u> <u>는 자전거</u>----- ----- ----- -----.</p>
<p>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⑥ (생 략)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u>크기와</u> <u>구조를</u>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u>크기, 구조</u> <u>및 제동장치(制動裝置)</u>----- ----- ----- -----.</p>
<p>⑧ ~ ⑩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 (생 략)</p>	<p>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 ----- -----.</p>

<p>1. ~ 8. (생략)</p> <p>9.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가 <u>개인형 이동장치</u>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p> <p>10. (생략)</p> <p>③ · ④ (생략)</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u>개인형 이 동장치 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u>----- -----.</p> <p>10.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